

## 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◆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회계

◆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○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('18~'22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</li> <li>▶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 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</li> <li>※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(§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</li> </ul>
	○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9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</li> <li>※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기</li> </ul>
	○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</li> </ul>

◆ 제외대상 :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예비비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-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(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)

